

「납부자자동이체」약관

은행은 납부자에게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인터넷 및 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특히, 이 약관 제5조의 출금일과 입금일에 관한 사항은 납부자에게 충실히 설명하여야 합니다.

제1조 약관의 적용

납부자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(이하 '납부자'라 합니다)와 KB국민은행 (이하 '은행'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신청·변경 및 해지

- ① 납부자가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,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자동이체(신규, 변경, 해지)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납부자자동이체를 변경,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 전 제2영업일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.

제 3 조 입금가능 예금 종목

-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(이하 `납기일`이라 합니다)에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(이하 `입금은행` 이라 합니다)의 지정계좌(이하 `입금계좌`라 합니다)로 입금 됩니다.
- ② 입금계좌는 당좌, 가계당좌, 보통, 저축, 자유저축,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,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납부자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제 4 조 영업일

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.

- ①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
- ② 토요일
- ③ 근로자의 날

제 5조 출금일 및 입금일

납부자 출금계좌에서 납기일(고객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,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)전 제1영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제 6조 이체금액의 인출 및 과실책임

① 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 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며, 해당일 영업시간 종료 후 4시간 경과시점의 현금화된 잔액 범위내로 합니다.



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(잔액증명서 발급, 연체, 법적 지급제한 등)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,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7 조 출금 우선순위

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에서 여러 건(카드대금결제, 어음수표대금결제, 타 자동이체 등)을 출금하여야할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<별첨> 자동이체출금 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제 8 조 입금 불능시의 처리

- ① 입금계좌 부재(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), 잔액증명서발급, 입금한도 초과, 법적제한,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.
- ② 입금계좌 부재,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SMS 등과 같은 전자적 매체로 통지하며, 은행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 해지 합니다.

제 9조 이용수수료

이용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하며,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.

제 10 조 계좌이동서비스

-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,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.
-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<u>www.payinfo.or.kr</u>)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,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③ 납부자는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 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납부자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, 애플리케이션 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하지 후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.

제 11조 약관의 변경

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.

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

-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, 전자금융 감독규정,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, 전자서명법을 적용합니다.

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납부자자동이체 및 구 주택은행의 납부자자동이체는 2002.9.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(시행일) 제8조 입금 불능시의 처리 약관의 변경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[별첨]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

1. 영업개시전 : 정기예금 이자지급

2. 영업시간중 : 타행자동이체, 대출이자, 신탁, 요구불이체, 선일자 등

영업점 직접처리분

3. 영업시간후 :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,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.

-1그룹: 대출이자, KB 카드대금, 영업점 개별 처리건(APT 관리비 등)

- 2 그룹: 대외청구자금(VAN, CMS, GIRO 등)

- 3 그룹 : 기타 수신 계좌이체, 적립식 예금이체(신탁포함), 요구불간 이체 등

※ 납부자자동이체 :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